第253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2005年4月26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

1.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2. 獨立紀念館法中改正法律案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4. 放送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
7.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
9.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탁금및보관금을지방은행으로의지정촉구건의안

附議된案件

1.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2
2. 獨立紀念館法中改正法律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이근식・박세환・안택수・정문헌・박성범・안상수・이상득・이인기・신중식・유승민・이해봉・서상기・최경환 의원 발의) ····· 3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김명주・김우남・김원웅・김재홍・김태년・김태홍・서재관・신국환・신중식・심재덕・안민석・안상수・엄호성・우제창・유시민・이시종・이윤성・정두언・정문헌・정청래・홍창선 의원 발의) ····· 3
4. 放送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 3
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
7.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정의용・김문수・김부겸・노회찬・박성범・원희룡・유선호・이혜훈・이화영・임종석・정병국・김명자・최성 의원 발의) ····· 6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여성위원장 제출) ····· 7
9.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탁금및보관금을지방은행으로의지정촉구건의안(김성조・우윤근・이계경・고경화・김무성・김정부・박찬숙・허태열・한선교・홍문표・김기춘・진수희・이낙연・심재엽・신국환・권경석・곽성문・이윤성・김병호・안홍준・김재원・박승환・김영덕・김명주・정병국・이계진・이재오・이재웅・박세환・김기현・권영세・김용갑・이규택・김영선・전여옥・김재경・문석호・김종률・전재희・김학송・임태희・김석준・박찬석・안택수・박종근・이해봉・정종복・맹형규・이인기・이상득・공성진・김광원・허천・장윤석・박혁규・이병석・정두언・최경환・김충환・강창일・권오을・강재섭・김태환・이상배・주성영・이명규・임인배・주호영・이덕모・손봉숙・박창달・안경률・이한구・엄호성・유승민・박재완・윤원호・강길부・서병수・김성곤・서갑원・신중식・이영호・최성・전병헌・구논회・홍재형・김영춘・우제창・유기홍・우상호・송영길・임채정・이인영・정청래・이광재・정장선・노현송・장복심・우원식・김형주・조정식・김낙성・이상열・이승희・유재건・문희상・이종걸・천정배・서재관・우제항・양형일・이근식・

백원우・복기왕・박명광・양승조・정성호・홍미영・김영주・안병엽・이목희・조배숙・이은영・김낙순・염동연・강성종・유승희・홍창선・김기석・권선택・박영선・김춘진・김선미・배기선・오영식・정세균・신기남・제종길・원혜영・최재천・선병렬・김교흥・이강래・김맹곤・한병도・김동철・주승용・박상돈・노영민・장경수・윤호중・신학용・김현미・이상경・최용규・이화영・정의용・유선호・장영달・김원웅 의원 발의) …… 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9
o 5분자유발언 …… 9

(14시13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원기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48인의 의원으로부터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시21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최규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 소속 서울 강북을 출신 최규식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 대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서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는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이고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지신탁 대상자를 공개 대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로만 한정하고 있던 것을 공개 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로 수정하여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비공개 대상 공무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백지신탁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백지신탁 하한액을 3000만 원 이상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하여 백지신탁 하한액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하였고, 그 밖의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지신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 정치권을 비롯하여 전 국민의 요망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獨立紀念館法中改正法律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이근식・박세환・안택수・정문헌・박성범・안상수・이상득・이인기・신중식・유승민・이해봉・서상기・최경환 의원 발의)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김명주・김우남・김원웅・김재홍・김태년・김태홍・서재관・신국환・신중식・심재덕・안민석・안상수・엄호성・우제창・유시민・이시종・이윤성・정두언・정문헌・정청래・홍창선 의원 발의)

4. **放送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4시2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항 독립기념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이경숙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가 심사한 독립기념관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기념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소관 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독립기념관이 국가보훈처로 이관될 경우 현충시설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문화시설로서의 성격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독립기념관에 대한 문화시설로의 활동과 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국제회의 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사업 및 관광 투자조합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연 및 출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재원을 지원하는 기금의 출연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및 기금 잠식의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출연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둘째 기금출자에 따른 투자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기금출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노웅래 의원, 임인배 의원, 손봉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시보광고는 지난해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법성이 지적된 바 있어 이를 조속히 법의 영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보광고를 규정하는 외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방송광고의 종류와 그 허용범위를 법에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복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향후 남북 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남북 간 방송 교류·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서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업권료라는 이름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을 다른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담하는 방송발전기금징수제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獨立紀念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放送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문화관광위원장)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독립기념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1인, 기권 2인으로서 독립기념관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2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3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시3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5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시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충주 출신의 이시종 의원입니다.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이용함으로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당초 농해수위원회는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보존및이용에관한특별법안,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회부되어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안의 제정방향과 그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경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독도는 문화재보호법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으나 해양수산자원과 광물자원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독도의 보존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법과 조화를 이루는 동 대안을 제정하여 현재와 미래세대가 독도에 관한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함과 동시에 국토의 한 부분으로서 독도의 이용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도와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 방안을 정함으로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이 법안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독도 해양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 및 지정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학술연구, 기념사업의 추진 및 독도의용수비대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시41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기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기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원 권선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 정부가 제출한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안,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사회기본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동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2년 1.17명을 거쳐 2003년 1.19명을 기록하는 등 세계 최저 수준이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향후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 비용의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고령사회 정책을 위하여서는 고용과 소득보

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각각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이러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출산·고령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및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기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정의용·김문수·김부겸·노회찬·박성범·원희룡·유선호·이혜훈·이화영·임종석·정병국·김명자·최성 의원 발의)

(14시4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8항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정의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정의용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의용 의원입니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13인의 발의로 제안된 이 결의안은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남아시아 지역 국가 및 그 외 국제적 재난지역에 대한 복구지원 등 대외원조정책이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된 결의안의 내용 중 긴급구호원조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나 대외공적개발원조 규모의 확대 등은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원칙 제정 및 이를 위한 재원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결의안의 제목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 및 해외 긴급구호 체제 강화 촉구결의안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2005년 4월 19일 제253회 국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결의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막대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정부와 국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신속한 피해복구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둘째, 우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가의 피해복구와 중장기적 재건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우리 정부가 국제적 재난 등의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재난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넷째, 우리 정부가 우리 국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외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맞게 대외원조집행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여성위원장 제출)

(14시4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8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위원회의 김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장대리 김희정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님 여러분!

여성위원회 소속 부산 연제구 출신 김희정 의원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8일 여성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APEC 정상회의 여성의제 채택을 제기하고 여성위원회가 공식 지지하였으며, 1월 31일 APEC 회의 최초로 젠더통합 문제가 정상회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위원회는 4월 11일 APEC 젠더통합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2005년 4월 16일 본 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현재 APEC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가 결성되어 있지 못하고 매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한 여성장관 회의도 2002년 2차 멕시코 여성장관 회의 이후 정기적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의 운영과 의제 선정 및 선언문 채택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젠더 전담관 회의인 GFPN을 넘어선 상설화된 APEC 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성장관 회의의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GFPN을 젠더실무그룹으로 승격시키고 경제협력체 운영의 젠더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적어도 APEC 내 회의 시 여성장관 회의가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안설명드린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

(여성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9.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탁금및보관금을지방은행으로의지정촉구건의안(김성조·우윤근·이계경·고경화·김무성·김정부·박찬숙·허태열·한선교·홍문표·김기춘·진수희·이낙연·심재엽·신국환·권경석·곽성문·이윤성·김병호·안홍준·김재원·박승환·김영덕·김명주·정병국·이계진·이재오·이재웅·박세환·김기현·권영세·김용갑·이규택·김영선·전여옥·김재경·문석호·김종률·전재희·김학송·임태희·김석준·박찬석·안택수·박종근·이해봉·정종복·맹형규·이인기·이상득·공성진·김광원·허천·장윤석·박혁규·이병석·정두언·최경환·김충환·강창일·권오을·강재섭·김태환·이상배·주성영·이명규·임인배·주호영·이덕모·손봉숙·박창달·안경률·이한구·엄호성·유승민·박재완·윤원호·강길부·서병수·김성곤·서갑원·신중식·이영호·최성·전병헌·구논회·홍재형·김영춘·우제창·유기홍·우상호·송영길·임채정·이인영·정청래·이광재·정장선·노현송·장복심·우원식·김형주·조정식·김낙성·이상열·이승희·유재건·문희상·이종걸·천정배·서재관·우제항·양형일이근식·백원우·복기왕·박명광·양승조·정성호·홍미영·김영주·안병엽·이목희·조배숙·이은영·김낙순·염동연·강성종·유승희·홍창선·김기석·권선택·박영선·김춘진·김선미·배기선·오영식·정세균·신기남·제종길·원혜영·최재천·선병렬·김교흥·이강래·김맹곤·한병도·김동철·주승용·박상돈·노영민·장경수·윤호중·신학용·김현미·이상경·최용규·이화영·정의용·유선호·장영달·김원웅 의원 발의)

(14시5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9항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탁금및보관금을지방은행으로의지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성조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성조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본 의원과 존경하는 우윤근 의원을 포함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탁금및보관금을지방은행으로의지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IMF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한 장기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지방의 실물경제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산업을 뒷받침할 금융기관인 지방은행, 종금사, 투신사 등의 퇴출과 대기업으로의 소유전환 등으로 지방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지방 금융기관의 지원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의 지나친 중앙집중과 지역 조성 자금의 역외 유출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지방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금융의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법원의 공탁금 및 보관금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조성되는 지방공공자금인 만큼 지방은행을 그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건의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첫째 건의안의 제명 중에서 “촉구”를 삭제하고, 둘째 공탁금 및 보관금의 공탁·보관은행 지정을 신설되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은행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기존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탁금및보관금을지방은행으로의지정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탁금및보관금을지방은행으로의지정촉구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3인, 기권 10인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탁금및보관금을지방은행으로의지정촉구건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8분)

○의장 김원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5분자유발언

○의장 김원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의원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16대 국회 때 끝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 재정계산 결과 현행 제도 유지 시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16대 국회는 정쟁 대상으로 삼았을 뿐 정작 제도 개선을 기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 개선은 우리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 현안이 되었고, 저 장복심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난해 8월 18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 개원 후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국민연금법 개정이 불투명하여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제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는 자칫 소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높습니다.

기초연금제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장점이 있으나 소득의 20% 지급 시 2005년 9조 원, 2030년 200조 원, 2070년에 1354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고비용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일보다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내실화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10%를 공공부조 대상으로 삼아서 국가가 이들의 생계와 의료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는 3%만을 책임지고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2004년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2만 5000명으로 전 국민의 3%에 불과하며, 나머지 7%는 생계와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절대빈곤층이 전 국민의 10.4%인 494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은 351만 5000명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여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서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심지어 생계형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하여 발생하는 생계형 자살은 사회적인 타살과 다름없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494만 명의 절대빈곤층 모두에게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기초연금제 도입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기초연금 도

입보다 공공부조 대상을 전 국민의 3%에서 10%로 확대하는 일이 사회보장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함에도 야당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제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은박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연금제도 개선을 지연시키는 무기로 사용한다면 매우 무책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국민적인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OECD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제도가 성숙되기 전에 연금을 개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차 재정계산 연도인 오는 2008년에는 수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 연금 급여가 본격화됩니다. 그때까지 제도 개선을 미룰 경우 연금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로 제도 개혁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호미로 막지 못하면 후일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드리려고 5분발언대에 나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5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8인)

찬성의원(203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한병도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반대의원(2인)

김영선　김태환

기권의원(3인)

심재엽 정갑윤 한광원

○獨立紀念館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0인)

찬성의원(19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석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허 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반대의원(11인)

강기갑 김재홍 노회찬 단병호
박상돈 심상정 이영순 정청래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기권의원(2인)

김정부 민병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19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석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허 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반대의원(12인)

강기갑 김영선 노회찬 단병호
박재완 송영선 심상정 윤건영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기권의원(1인)

정화원

○放送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0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석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허 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반대의원(4인)

김병호 김정부 엄호성 이방호

기권의원(2인)

전재희 정화원

(박성범·이혜훈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11인, 찬성의원 205인, 기권의원 2인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의원(214인)

찬성의원(21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기권의원(1인)

제종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1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상경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기권의원(1인)

선병렬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

투표의원(209인)

찬성의원(20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석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상경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

투표의원(200인)

찬성의원(19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상경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기권의원(1인)

정화원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탁금및보관금을지방은행으로의지정촉구건의안

투표의원(201인)

찬성의원(17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상경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반대의원(13인)

김광원 김애실 김정부 김종인
박계동 박재완 배일도 서혜석
신계륜 우원식 윤건영 이계안
이종구

기권의원(10인)

김명자 김형주 심재철 이방호
이상배 이종걸 이화영 장향숙
정세균 채수찬

○出席議員(240人)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근태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진하

○請暇議員(35人)

강혜숙 곽성문 권영길 김문수

김 양 수　김 재 원　김 진 표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홍 일　류 근 찬　박 근 혜
박 희 태　변 재 일　손 봉 숙　심 재 덕
안 병 엽　오 영 식　우 제 창　유 선 호
이 규 택　이 상 열　이 윤 성　이 정 일
임 인 배　장 윤 석　전 여 옥　조 성 태
최 경 환　최 재 성　최 철 국　한 선 교
한 화 갑　홍 문 표　황 우 여

○出席國務委員

행정자치부장관　오 영 교
문화관광부장관　정 동 채
보건복지부장관　김 근 태
해양수산부장관　오 거 돈

【報告事項】

○特別委員長 選任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위 원 장 정 의 화
(4월20일)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 태 홍
(4월26일)

○常任委員長 職務代理 指定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김 성 곤
4월18일
4월21일 (4일간)
(4월18일)

○幹事 選任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 특별	임종석	열린우리당
	박진	한나라당

(4월20일)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	신중식	열린우리당
	이병석	한나라당

(4월26일)

○幹事 改選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정무	김정훈	한나라당
재정경제	최경환	
산업자원	이병석	

(4월18일)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건설교통	이호웅	열린우리당

(4월20일)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윤리특별	주호영	한나라당

(4월26일)

○常任委員 辭任 및 補任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이해찬	재정경제	보건복지	열린우리당
유시민	보건복지	재정경제	

(4월18일)

○特別委員 辭任 및 補任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정치개혁특별	유시민	이종걸	열린우리당

(4월18일)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중국의고구려사 왜곡대책특별	한명숙	임종석	열린우리당
	김태홍	최재천	
	·	이기우	

(4월20일)

○議案 提出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윤건영·고경화·공성진·김재경·김태환·박세환·박재완·배일도·안명옥·안상수·안홍준·엄호성·이군현·이원영·이인기·이주호·이혜훈·이해봉·정화원·최경환·최인기 의원 발의)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이인기·정종복·김태환·곽성문·안택수·임인배·김충환·이상배·최경환·이명규·이상득·고흥길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윤건영·고경화·공성진·김재경·김태환·박세환·박재완·배일도·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군현·이인기·이주호·이혜훈·정화원·최경환·최인기 의원 발의)
4월1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 민간사이버외교사절단(반크)에 대한 지원 촉구결의안

(4월14일 김희정 의원 외 119인 발의)

4월1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이강래·최용규·오영식·김동철·김영주·유필우·이시종·박병석·송영길·신학용·문학진·선병렬·김교흥·김기석·정갑윤 의원 발의)

4월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식품안전기본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김재원·김영덕·김태환·김형오·박승환·박재완·이계진·이상배·이정일·최인기·홍문표 의원 발의)

4월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이시종·한광원·조일현·신중식·노영민·김우남·강혜숙·최재성·이화영·김기석·백원우·원혜영 의원 발의)

4월1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國家保安法 一部改正法律案(장윤석 의원 대표 발의)

(4월14일 장윤석·박세환·이명규·홍준표·김재경·정종복·맹형규 의원 외 111인 발의)

4월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진수희·박세환·전여옥·김원웅·김재경·박형준·김춘진·이윤성·유정복·박찬숙·김학송·엄호성·고경화·이인기·김명주·유승희·이경숙·정병국·이혜훈·전병헌·김애실·이화영·황우여·맹형규·권오을 의원 발의)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진수희·박세환·전여옥·김원웅·김재경·박형준·김춘진·이윤성·유정복·박찬숙·김학송·엄호성·고경화·이인기·김명주·유승희·이경숙·정병국·이혜훈·전병헌·김애실·이화영·황우여·맹형규·권오을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진수희·박세환·전여옥·김원웅·김재경·박형준·김춘진·이윤성·유정복·박찬숙·김학송·엄호성·고경화·이인기·김명주·유승희·이경숙·정병국·이혜훈·전병헌·김애실·이화영·황우여·맹형규·권오을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노현송·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명자·김성곤·김재경·김재홍·문학진·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신기남·신중식·심재덕·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인태·유필우·이계경·이낙연·이시종·이원영·이윤성·전병헌·정청래·조성래·조일현·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노현송·강창일·구논회·김낙순·김명자·김재경·김재홍·김태홍·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송영길·신국환·신기남·심재덕·안병엽·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필우·이계경·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원영·이윤성·이해봉·조성래·조일현·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엽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안병엽·최인기·엄호성·김태홍·신중식·우윤근·김덕규·이시종·조경태·유시민·이인기·우제창·서재관·정성호·염동연·김교흥·조일현·안상수·김명자·김우남 의원 발의)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김기현·강재섭·고경화·고진화·고흥길·공성진·곽성문·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문수·김병호·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부·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창달·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안상수·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

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호・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형근・정화원・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최경환・최구식・최병국・최연희・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 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1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

4월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屋外廣告物등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박상돈・권선택・손봉숙・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

4월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靑少年保護法 一部改正法律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박상돈・권선택・손봉숙・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김병호・최구식・김정훈・권경석・서병수・허천・안홍준・박형준・김정부・정갑윤・허태열・김학송・안택수・곽성문・김덕룡・김기현・김무성・권철현・유승민・권오을・황우여・김태환 의원 발의)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김병호・권오을・황우여・허태열・정갑윤・김학송・김태환・안택수・곽성문・김덕룡・김기현・김무성・권철현・이규택・김재경・이윤성・정병국・최구식・김정훈・권경석・서병수・허천・김정부・안홍준・박형준・유승민・유기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박세환・김재경・이윤성・이주호・유정복・유기준・황우여・이인기・유승희・이해봉・정문헌・엄호성・신기남・안상수・정병국・김덕규・안병엽・서재관・정성호・김애실・박재완・김태년 의원 발의)

4월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兒童福祉法 一部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안명옥・이주호・배일도・김석준・임태희・김성조・진영・진수희・정화원・김영숙・박재완 의원 발의)

4월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김석준・이계경・김정부・이명규・김정훈・김재경・서상기・안명옥・정의화・김애실 의원 발의)

4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4월18일 전병헌・고진화・오제세・이상득・안민석・박영선・최인기・양형일・유정복・김재홍・김교홍・강혜숙・박재완・조일현・엄호성・노웅래・노현송・이해봉・문학진・조배숙・안상수・이근식・정병국・최재천・이원영・이혜훈・제종길・김태년・신중식・김한길・유필우・서재관・우제창・윤호중 의원 발의)

4월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4월18일 이군현・엄호성・황진하・박재완・양승조・김석준・안병엽・김영숙・이계경・안택수・진수희・정두언・신국환・김재원・고경화・이혜훈 의원 발의)

4월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醫療法 一部改正法律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

(4월18일 유필우・노웅래・이시종・박상돈・정장선・이호웅・송영길・한광원・이규택・정덕구・유정복・손봉숙・곽성문・이기우・안명옥・백원우・김재홍・신학용・이인기・

오제세·황우여·노현송·박순자·이석현·장향숙 의원 발의)

4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필우 의원 대표발의)

(4월18일 유필우·이해봉·이규택·최인기·김재경·신중식·양형일·오제세·노현송·신국환·유정복·이시종·안상수·이계경·이호웅·김효석·한광원·김동철·박상돈·이혜훈·박창달·정의화·백원우·임종인·서재관·이근식·김춘진·허태열·김종률·전병헌 의원)

4월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

(4월18일 여성위원장 제출)

不動産仲介業法 一部改正法律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4월19일 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4월19일 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

駐車場法 一部改正法律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4월19일 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道路交通法 一部改正法律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4월19일 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 발의)

地方自治法 一部改正法律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4월19일 백원우·서혜석·오영식·정성호·양승조·유승희·선병렬·강기정·이기우·문학진·임종인·노영민·이상민·김종률·김형주·정청래·박명광·우원식·김낙순·서갑원·조정식·정덕구·박찬석·홍창선·안민석·유시민·장향숙·최철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刑事訴訟法 一部改正法律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4월19일 윤호중·이윤성·이규택·권오을·김재홍·유선호·염동연·서갑원·김태홍·이해봉·조경태·우상호·김종률·박찬숙·오제세·황우여·김교흥·백원우·최인기·서혜석·엄호성·이상민·송영길·전병헌 의원 발의)

4월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對外貿易法 一部改正法律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4월19일 송영선·고경화·권경석·권영세·김명자·김문수·김성곤·김양수·김용갑·김재경·김재원·박성범·박세환·박재완·박찬석·박찬숙·박형준·서병수·신계륜·안경률·안명옥·안상수·안홍준·엄호성·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이계경·이규택·이상득·이윤성·이종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태희·정두언·정화원·조성태·최구식·한선교·허태열·황진하 의원 발의)

化學武器의금지를위한特定化學物質의製造·輸出入規制등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4월19일 송영선·고경화·권경석·권영세·김명자·김문수·김성곤·김양수·김용갑·김재경·김재원·박성범·박세환·박재완·박찬석·박찬숙·박형준·서병수·신계륜·안경률·안명옥·안상수·안홍준·엄호성·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이계경·이규택·이상득·이윤성·이종구·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태희·정두언·정화원·조성태·최구식·한선교·허태열·황진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20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4월19일 이주호·김영숙·김재경·김재원·박성범·박재완·안명옥·엄호성·유기준·유승민·윤건영·최구식 의원 발의)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全部改正法律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4월19일 백원우·서혜석·오영식·정성호·양승조·유승희·선병렬·강기정·이기우·문학진·임종인·노영민·이상민·김종률·김형주·정청래·박명광·우원식·김낙순·서갑원·조정식·정덕구·박찬석·홍창선·안민석·유시민·장향숙·최철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國會法 一部改正法律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4월20일 김기현·이해봉·황우여·김재경·이인기·권오을·엄호성·윤건영·정종복·김양수·박재완·김재원·박세환·이주호·허태열·최병국·김충환·이시종 의원 발의)
4월21일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證券去來法 一部改正法律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4월20일 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4월20일 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
(4월20일 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2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商法 一部改正法律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4월20일 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4월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一部改正法律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4월20일 이혜훈·박재완·정두언·엄호성·심상정·유승민·최경환·조승수·김정훈·권영길·임태희 의원 발의)
4월21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농지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4월21일 김낙성·조일현·신중식·이인제·홍문표·김재원·김영덕·김명주·김우남·이시종·장경수·류근찬·한화갑 의원 발의)
4월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및 제협정 재체결 촉구결의안
(4월21일 김원웅·강창일·김재홍·장복심·김태홍·강기갑·김태년·이상민·홍미영·강혜숙·안민석·김재윤·정청래·염동연·이종걸·선병렬·김낙순·이혜훈·신국환·안상수·장향숙·현애자·강기정·이재오·정병국·천영세·권오을 의원 발의)
4월2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4월21일 안명옥·김재경·이윤성·권오을·이해봉·고진화·전여옥·고경화·박재완·김애실·맹형규·조경태·최재성·정병국·문학진·유승민·신중식·서혜석·엄호성·임태희·배일도·이인기·유정복·이계진·이주호 의원 발의)
4월22일 여성위원회에 회부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4월21일 노웅래·염동연·이상민·김영주·김태홍·김재경·이광철·이해봉·고흥길·오제세·김희선·신중식·김종률·강길부·우제창·이원영 의원 발의)
4월2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4월21일 김영숙·이주호·진수희·박진·권철현·유정복·이해봉·노웅래·이인기·안택수·김재경·안상수·조경태·안병엽·서재관·권경석·이시종·안경률·안명옥·박세환·지병문·김기현·정의화 의원 발의)
4월22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4월22일 이혜훈·박세환·엄호성·황우여·박찬숙·김재경·이인기·유정복·김희정·최경환·김재원 의원 발의)
4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信託業法 一部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4월22일 송영길·이상민·엄호성윤호중·우제창·조정식·김교흥·김태년·강길부·이호웅·오제세·김현미·정성호 의원 발의)
4월2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國會法 一部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4월22일 정병국·이성권·서병수·권오을·엄호성·진수희·김명주·정화원·남경필·박형준·박찬숙·이미경 의원 발의)

國會事務處法 一部改正法律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4월22일 정병국·노웅래·이인기·이성권·서병수·권오을·진수희·김명주·정화원·남경필·장윤석·박형준·이계경·박찬숙·

박계동·엄호성·윤건영·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26일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4월25일 주성영·곽성문·박혁규·권오을·정병국·이인기·김태환·박세환·정문헌·김기현·김재경·권영세·주호영·김성조·장윤석·조성태·엄호성·이계진·서상기·송영선·박순자 의원 발의)

4월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

(4월25일 천영세·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鄕校財産法 一部改正法律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4월25일 박찬숙·이혜훈·양승조·박재완·유승민·안명옥·김재경·이인기·김재원·유정복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26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4월25일 최인기·이상민·홍창선·이인기·우제창·이혜훈·박상돈·신중식·김효석·이영호·주승용·김성곤·염동연·김태홍·최병국·안택수·구논회·박재완 의원 발의)

4월2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4월25일 박기춘·이인기·최규식·서재관·제종길·박성범·노현송·조성래·우제창·원혜영·강창일·안병엽·우제항·양형일·정의용·유인태·심재덕 의원 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4월25일 박기춘·이인기·최규식·서재관·제종길·노현송·조성래·원혜영·강창일·안병엽·우제항·우제창·양형일·정의용·심재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4월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建築法 一部改正法律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4월25일 김병호·이규택·유기준·이재오·이윤성·정병국·박찬숙·최구식·안홍준·김재원·엄호성·우제창·허천·허태열·이혜훈·황우여·정성호·서혜석·박형준·권오을 의원 발의)

4월2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

(4월25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放送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4월25일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4월26일 의장 제의)

4월27일
5월 2일 (6일간)

○議案審査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탁금및보관금을지방은행으로의지정촉구건의안

(2004년12월17일 김성조·우윤근·이계경·고경화·김무성·김정부·박찬숙·허태열·한선교·홍문표·김기춘·진수희·이낙연·심재엽·신국환·권경석·곽성문·이윤성·김병호·안홍준·김재원·박승환·김영덕·김명주·정병국·이계진·이재오·이재웅·박세환·김기현·권영세·김용갑·이규택·김영선·전여옥·김재경·문석호·김종률·전재희·김학송·임태희·김석준·박찬석·안택수·박종근·이해봉·정종복·맹형규·이인기·이상득·공성진·김광원·허천·장윤석·박혁규·이병석·정두언·최경환·김충환·강창일·권오을·강재섭·김태환·이상배·주성영·이명규·임인배·주호영·이덕모·손봉숙·박창달·안경률·이한구·엄호성·유승민·박재완·윤원호·강길부·서병수·김성곤·서갑원·신중식·이영호·최성·전병헌·구논회·홍재형·김영춘·우제창·유기홍·우상호·송영길·임채정·이인영·정청래·이광재·정장선·노현송·장복심·우원식·김형주·조정식·김낙성·이상열·이승희·유재건·문희상·이종걸·천정배·서재관·우제항·양형일·이근식·백원우·복기왕·박명광·양승조·정성호·홍미영·김영주·안병엽·이목희·조배숙·이은영·김낙순·염동연·강성종·유승희·홍창선·김기석·권선택·박영선·김춘진·김선미·배기선·오영식·정세균·신기남·제종길·원혜영·최재천·선병렬·김교흥·이강래·김맹곤·한병도·김동철·주승용·

박상돈·노영민·장경수·윤호중·신학용·김현미·이상경·최용규·이화영·정의용·유선호·장영달·김원웅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

(2월7일 정의용·김문수·김부겸·노회찬·박성범·원희룡·유선호·이혜훈·이화영·임종석·정병국·김명자·최성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

(2004년9월22일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獨立紀念館法中改正法律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13일 이병석·이근식·박세환·안택수·정문헌·박성범·안상수·이상득·이인기·신중식·유승민·이해봉·서상기·최경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9일 김재윤·강창일·김명주·김우남·김원웅·김재홍·김태년·김태홍·서재관·신국환·신중식·심재덕·안민석·안상수·엄호성·우제창·유시민·이시종·이윤성·정두언·정문헌·정청래·홍창선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放送法中改正法律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04년7월12일 노웅래·황우여·유시민·김원웅·김태홍·심재덕·노현송·한광원·민병두·신국환·안민석·최용규·이화영·이시종 의원 발의)

放送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2004년7월14일 임인배·김태환·황우여·김용갑·심재철·이인기·김기현·권경석·이계진·이상배·김병호 의원 발의)

放送法 一部改正法律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월1일 손봉숙·진수희·김효석·정화원·박계동·이정일·고진화·이혜훈·권선택·김충환·박순자·신중식·엄호성·박형준·김태홍·이승희·이근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독도보존및이용에관한특별법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24일 최경환·서병수·이해봉·엄호성·이상득·안택수·유정복·김광원·최구식·이상배·유승민·이규택·박창달·김재원·김병호·황우여·김영숙·박재완·이인기·김태환·박순자·이윤성·김양수·이병석·박승환·정의화·이혜훈·허천·심재철·김애실·한병도·오제세·우제창·신국환 의원 외 92인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4월14일 이시종·한광원·조일현·신중식·노영민·김우남·강혜숙·최재성·이화영·김기석·백원우·원혜영 의원 발의)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4월15일 김기현·강재섭·고경화·고진화·고홍길·공성진·곽성문·권경석·권영세·권오을·권철현·김광원·김기춘·김덕룡·김명주·김무성·김문수·김병호·김석준·김성조·김애실·김양수·김영덕·김영선·김영숙·김용갑·김재경·김재원·김정부·김정훈·김충환·김태환·김학송·김형오·김희정·나경원·남경필·맹형규·박계동·박근혜·박성범·박세환·박순자·박승환·박재완·박종근·박진·박찬숙·박창달·박형준·박희태·배일도·서병수·서상기·송영선·심재엽·심재철·안경률·안명옥·안상수·안택수·안홍준·엄호성·원희룡·유기준·유승민·유정복·윤건영·이강두·이경재·이계경·이계진·이군현·이규택·이명규·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성구·이성권·이윤성·이인기·이재오·이재웅·이재창·이종구·이주호·이한구·이해봉·이혜훈·임인배·임태희·장윤석·전여옥·전재희·정갑윤·정두언·정문헌·정병국·정의화·정종복·정형근·정화원·주성영·주호영·진수희·진영·최경환·최구식·최병국·최연희·한선교·허천·허태열·홍문표· 홍준표·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고령사회기본법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21일 장복심·신기남·이재오·오제세·제종길·주승용·엄호성·이종걸·이근식·노웅래·이상락·심재덕·박상돈·김기석·장경수·서재관·정두언·김재홍·노영민·김태년·김낙순·염동연·오영식·김성곤·최철국·이해봉·임종석·한병도·김형주·유선호·김교흥·문학진·이낙연·윤호중·이인영·이화영·백원우·김영숙·권선택·조배숙·우제창·김영춘·이상경·이원영·장영달·구논회·최인기·신학용·조경태·김재윤·황우여·이용희·강성종·조정식·서갑원·박홍수·김석준 의원 발의)

고령사회기본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5일 김춘진·강혜숙·조배숙·김성곤·이종걸·장향숙·이은영·이시종·제종길·임종석·신기남·이상락·염동연·강기정·정성호·문석호·백원우·한광원·김원웅·이재오·김재윤·이기우·한병도·김교흥·한명숙·문학진·장영달·이석현·문희상·최규성·김선미·이화영·유필우·이목희·노영민·심재덕·이호웅·김진표·문병호·유시민 의원 발의)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4일 안명옥·김덕룡·이한구 의원 외 118인 발의)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안

(2004년11월8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議案 撤回

국회의원(박영선)징계안

(2004년12월31일 남경필 의원 발의)

4월25일 발의자 철회요구

국회의원(남경필)징계안

(1월5일 박영선 의원 발의)

4월25일 발의자 철회요구

○請願 提出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4월14일 충남 아산시 온양1동 41-9 이상만으로부터 홍문표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4월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1-5 청광빌라트 401호 정남길 외 2888인으로부터 전병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새 화폐도안의 과학자(장영실) 초상 채택에 관한 청원

(2005년4월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 108-803 정태섭 외 3인으로부터 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20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삼척시 관내 해안철조망 개방에 관한 청원

(2005년4월19일 강원 삼척시 정상동 청솔1차아파트 105-1102 안호성 외 133인으로부터 김원웅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2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4월1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개혁위원장 권해수 외 4인으로부터 강창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구간(대산) 연장에 관한 청원

(2005년4월20일 충남 서산시 읍내동 114-1 충남서부상공회의소 회장 최길학 외 29인으로부터 박상돈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05년4월21일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 여수시의회 의원 이행우 외 25인으로부터 김성곤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

4월2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년4월22일 대전 중구 중촌동 12-2 중도쇼핑 308호 유병우로부터 박상돈 의원의 소개로 제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올바른 우리말 영문표기 채택에 관한 청원

(2005년4월22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208-32 국제그린빌 401호 우리말 영어식 표기학회 정회원 김복문으로부터 고흥길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請願 審査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2004년10월4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이명순 외 5인으로부터 김재홍 의원 외 16인의 소개로 제출)

언론피해구제법제정에관한청원

(2004년10월4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807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이명순 외 5인으로부터 김재홍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대체입법에관한청원

(2004년1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이장희로부터 임종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언론피해구제법제정에관한청원

(2004년1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이장희로부터 임종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4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要求書 提出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4월22일 권오을·김영덕·이규택·이상배·홍문표·강기갑·한화갑·김낙성·최인기 의원 등 148인 제출)

○計劃書 提出

2005년도 지역신문 발전기금 운용계획

(4월22일 정부 제출)

4월2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書面質問書 提出

기상청의 기상정보료 징수에 관한 질문서

(4월14일 이해봉 의원 제출)

동북아균형자론 및 외교현안에 관한 질문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질문서(4건)

(이상 5건 4월14일 고진화 의원 제출)

산업도로 개설 등에 관한 질문서

지역화합형 혁신도시건설 등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4월14일 박희태 의원 제출)

전직 대통령 추징금에 관한 질문서

열린학교 100개 설립에 관한 질문서

비문해자 교육에 관한 질문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질문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질문서

(이상 5건 4월15일 최재성 의원 제출)

표준자오선 변경 등에 관한 질문서

Hospital School 등에 관한 질문서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질문서

(이상 3건 4월15일 허천 의원 제출)

검찰인사에 관한 질문서

(4월18일 김성조 의원 제출)

철도청의 유전의혹에 관한 질문서

(4월19일 권영세 의원 제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질문서

(4월19일 최재성 의원 제출)

기획예산처의 수시배정에 관한 질문서

(4월22일 이해봉 의원 제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요구에 관한 질문서

(4월22일 이상열 의원 제출)

○書面答辯書 提出

반환미군기지 무상양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4월14일 정부 제출)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투자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동·남해안권 원전시설 집중화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사건기록·통지서 발송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4건 4월18일 정부 제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4월19일 정부 제출)

북한 인권문제, 사형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4월20일 정부 제출)

미신고시설 생활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참여정부 2년 평가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4월21일 정부 제출)

쌀재협상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항공안전 및 보안의 책임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4월22일 정부 제출)

(이상 1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